

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19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다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관련 지원 및 협력(안 제6조~제8조)
- 라.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위원회 설치(안 제9조)
- 마. 공로에 따른 포상(안 제10조)

3. 제정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 없음

5. 예산수반 사항: 덧붙임(비용추계서)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 기간: 2025. 9. 5.~2025. 9. 25.(21일간)

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자체개선안 동의(조례안 제9조 제3항 관련)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사항: 덧붙임

○ 경기도 타 시군 도심항공교통 관련 조례 제정 현황

10. 관련부서: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

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.

1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

2.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)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고용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
2.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

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하남시 직제에 따른 국장, 단장, 담당관
 2.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실과소장
 3.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
 4.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·교육·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·단체의 임직원
 5.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,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.
-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「하남시 각종

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공무원·단체·법인 등에 대하여 「하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광역교통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광역교통과장 박 창 원
	팀장 직위·성명	광역교통팀장 전 천 후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전 천 후 (031-790-5267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5조
-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10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위원회 운영 참석·자문 수당 등 지급
-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 운영(참석·자문 수당 등) : 2백만원
-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: 160백만원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
총 소요액	162	2	2	2	2
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	2	2	2	2	2
하남시 도심항공교통 기본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	160				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 없음

4. 작성자: 광역교통과장(박창원)

관계법령 발췌서

1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4. 4. 25.] [법률 제19768호, 2023. 10. 24., 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심항공교통”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심형항공기,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·관리·운영체계를 말한다.
2. “도심형항공기”란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한 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(이하 “국가교통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.
3. “버티포트”(Vertiport)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·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시설을 말한다.
4. “도심항공교통회랑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의 상공에 표시한 공간의 길이를 말한다.
5. “도심항공교통산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 - 가. 도심형항공기의 개발[도심형항공기의 기체(機體) 관련 소재·부품·장비의 개발을 포함한다]과 관련된 산업
 - 나. 도심항공교통의 개발·건설·운영·관리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
6. “실증사업구역”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7. “시범운용구역”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, 관광비행, 비행훈련, 수색·구조·의료·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8. “도심항공교통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- 가.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: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
- 1) 정기편 운항: 버티포트와 버티포트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도심형항공기 운항
 - 2) 부정기편 운항: 정기편 운항 외의 도심형항공기 운항
- 나.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: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, 교통흐름 관리, 비행계획 승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이탈 감시 등 교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- 다. 버티포트운영·관리사업: 제12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버티포트를 운영·관리하는 사업
- 라.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: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수색·구조, 의료·응급후송 등을 하거나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- 마.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9. “버티포트개발사업”이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·착륙 및 항행,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·업무·문화·관광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버티포트를 개발·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.
10. “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”란 위치정보 및 기상·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.
11. “규제특례”란 실증사업구역 또는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것으로서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.

제16조(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) ①~② 생략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22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·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도심형항공기의 안전, 운항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
2.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·운영 사업
3.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·갱신 사업
4.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
5.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2

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25. 2. 21.] [법률 제19768호, 2025. 2. 7., 제정]

제16조(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)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(「국유재산법」 제28조, 제29조 및 제42조제1항·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정한다.

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고용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.

제2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의 부합성
2.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형항공기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절성
3.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·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참고

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

구분		조례명
1	경기도	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
2	고양시	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3	김포시	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
4	성남시	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
5	시흥시	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6	화성시	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